
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10] <개정 2025. 7. 1.>

기능별 재난대응체제(제34조제1항관련)

기 능	구 분	내 용
비상경고 체 제	구축사항	1. 확성기·긴급방송시스템·텔레비전방송시스템·방송차량·일제전화시스템·유인물 및 인터넷 등 지역주민에 대한 비상경고 전파수단 2. 비상경고 임무를 담당하는 상황요원 3. 기상청 기상예보 모니터링시스템 4. 재난유형별 및 단계별 비상경고 메시지의 예시 5. 인접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비상연락시스템 6. 긴급구조 자원봉사자의 비상연락시스템 7.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비상통지 연계시스템 8. 경찰순찰차·소방차 및 구급차 등 방송이 가능한 차량을 이용한 비상경고전파체계 9.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비상경고 수단 10. 그 밖에 신속한 긴급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비상경고 전파수단
	대비사항	1. 비상경고임무를 담당할 직원의 지정 및 교육훈련 2. 비상경고체제의 운용연습 3. 그 밖에 비상경고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능력향상
대중정보 제공체제	구축사항	1. 대중정보센터 설치·운영계획 2. 긴급구조를 위한 실종자 정보의 수집 및 신고접수체제 3. 유언비어 통제계획 4. 방문자 관리계획 5. 보도자료의 작성 및 정보제공계획 -진행 및 예견되는 위험요인과 위험범위 -인명 및 재산의 피해 현황 -재난발생원인 및 재난대처요령 -긴급구조활동 상황 -유언비어 통제 및 해명 정보 -실종자 신고방법 6. 언론기관의 재난현장 취재활동의 관리계획

피해상황 분석체제	구축사항	1.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확보한 재난상황 정보의 수집 및 종합 분석계획 2. 효율적 상황분석을 위한 표준 상황분석 기법 및 서식 3.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통신체계 4. 정보수집 및 상황분석을 위한 연습계획
구조진압 체 제	구축사항	1.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관리 2. 긴급구조현장지휘대 요원 및 출동대원의 교육훈련 3. 현장 지휘통신수단의 확보 4. 그 밖에 구조·진압활동에 필요한 사항